

Incheon, The Leading City of Korean Economy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I. 교육분야

1.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출범 -----	〈신설〉 --	6
2.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부과정 개교 -----	〈신설〉 --	7
3.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 -----	〈신설〉 --	8
4.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출범 -----	〈신설〉 --	9
5. (재)인천장학회 사업 확대 -----		10
6.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및 육성 -----		11

II. 출산·보육 분야

7.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13
8. 양육수당(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		14
9.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15
10.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16
11. 임신부 엽산제 지원대상 확대 -----		17
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		18

III. 일자리 창출 분야

1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 -----	〈신설〉 --	20
14. 청년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		21
15.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22
16. 직업훈련사업 확대 -----		23
17.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소개 -----		24
18. 인천전직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		25
19.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		26

IV. 사회복지 분야

20.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	28
21.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29
22.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 <신설> --	30
23.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31
24.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및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 <신설> --	32
25.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신설> --	33
26. 중증장애인 자립체험 홈 확대 -----	34
27.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	35
28.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확대 -----	36
29.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신설> --	37

V. 가정·청소년 분야

30.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 <신설> --	39
31.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 <신설> --	40
32.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사업 시범 운영 ----- <신설> --	41
33. 초등학생 대상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확대 -----	42
34. 청소년 복지시설 보호기능 강화 -----	43
35.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준 인상 -----	45
36. 다자녀 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美」사업 운영 ----- <신설> --	46
37.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인상 -----	47

VI. 노인 분야

38.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 <신설> --	49
39.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운영 -----	50

VII. 생활·민원 분야 (민원,청소,장사)

40.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	52
41. 청각언어장애시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상담 지원 -----	53
42. 여권 발급수수료 인하 -----	54
43. 공설화장시설(시립승화원) 사용료 감면 확대 -----	55
44.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 <신설> --	56
45. 소규모수도시설 업무는 군·구 → 시로 이관 -----	57
46. 공공도서관 확충 -----	58
47.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 <신설> --	59
48.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	60
49.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변경 -----	61

VIII. 교통·건축·주택관리 분야

50.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무의 여행 -----	63
51. 팽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준공 -----	64
52.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등 사무 이양 -----	65
53.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추진 ----- <신설> --	66
54.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	67

IX. 안전·소방 분야

55.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 <신설> --	69
56.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 실시 ----- <신설> --	70
57.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신설> --	71
58.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73
59. 생활안전 구조활동 전담구조대 운영 -----	74

X. 도시계획 분야

60.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류 하나로 간편하게 -----	76
61. 월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	77
62. 재개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 --- <신설> --	78
63. 기반시설 중 체육설의 범위 제한 -----	79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완화(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 <신설>-	80
65.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 신설 ----- <신설> --	81
66.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층수) 완화 ----- <신설> --	82
67.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신설> --	83
68.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 <신설> --	84

XI. 세정 분야

69.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	86
70. 지방세 「그린 앱」 고지 및 납부서비스 시행 ----- <신설> --	87
71.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 -----	88

XII. 농축수산업 분야

72. 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 및 영업시간 변경 운영 -----	90
73.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 <신설> --	91
74. 축산업 허가제 시행 -----	92
75. 야생고양이 TNR(중성화 후 방사) 시행 -----	93
76. 식육·가공품 판매업 시행 -----	94

- 교육 분야 -

-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출범<신설>
-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부과정 개교<신설>
- ❖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신설>
- ❖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출범<신설>
- ❖ (재)인천장학회 사업 확대
- ❖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및 육성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출범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국립대학교가 없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천 최초의 종합국립대학교를 설립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인천최초의 종합국립대학 설립 : 2013년 1월
 -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전환
 - 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
 - 카이스트, 울산과기대, 서울대에 이어 우리나라 네 번째 국립대학법인
 - 거점 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
 -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 추진사항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등기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확보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440-2176~9,

인천대학교 발전기획과 ☎ 835-9480]

한국뉴욕주립대학교 학부과정 개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우리나라 외국대학캠퍼스 중 최초로 학부과정을 개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 대학원 과정 개교(2012년)

- 컴퓨터과학, 기술경영학과
- 석·박사 과정
- 총 학생 407명

금년부터는

○ 학부 과정 추가 개교

- 기술경영학과
- 총 학생 807명(학부+ 대학원)
- ※ 2013년 학부 과정 100명 모집
- 등록금 : \$8,984(학기당)

○ 주요 특징

- 美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학위 수여
- 미국 본교 교수진 파견,
모든 교육과정 영어로 진행
- 학부 과정 중 2, 3학기 본교에서 수학

※ 美 뉴욕주립대 소개

- 1957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 24,549명의 학생(학부 16,342명, 대학원: 8,252명)과 1,900명 교원으로 구성된 미국 최고의 주립대학 중의 하나
-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미국 공립대학교 순위에서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에 이어 2위 차지(2010년)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서비스산업유치과 ☎ 453-7333]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

다문화 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 진학 및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연령별·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초·중·고 통합 기숙형 대안학교가 개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

- 학교명 : 인천한누리학교
- 개교일 : 2013. 3. 1
- 학급수 : 14학급(초중고 통합)
- 학생수 : 210명(학급당 15명)
- 위 치 : 남동구 논현동 640-2
- 市지원 : 기숙사 건립비 2,370백만원
- * 모집단위 : 인천 및 전국

이 학교는 2013년 3월부터 개교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440-2164]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출범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수행과 더불어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고자 출범하며,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인천 평생교육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은

- 위치 : 서구 인재개발원 內
- 정책개발, 연수, 군·구 평생교육 기반 구축사업 지원

☞ Control Tower 역할

- 국가, 교육청, 군·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Bridge 역할

- 학습동아리육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Citizenship교육

☞ Hub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440-2193~4]

[재] 인천장학회 사업 확대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하여 [재]인천장학회를 [재]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장학생선발
 - 480명 539백만원
- ◇ 장학금 위탁사업
 - 상공회의소, 송원장학재단, 동아제약, 청아치과 등 장학금 위탁

금년부터는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확대
 - 1,000여명 10억원
 - ※ 녹색장학금 신설
- 장학사업의 다변화
 - 글로벌인재육성 장학생을 위한 시티즌십 캠프
 - 연인(延仁)프로젝트
(연세대학생과 함께하는 관내학생과의 멘토링)
 - 장학클럽 확산 순회설명회
- 평생교육 진흥사업
 - 평생교육진흥원 개관
 - 평생학습축제
 -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440-2172~4]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및 육성

지난해 우리시 3개구(연수구, 서구·계양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특구육성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하여 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적극 육성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 ※ 교육국제화특구 지정('12. 9. 2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서구·계양구
 - 대구광역시 북구, 달서구
 - 전라남도 여수시
 (우리시가 전체의 50% 차지)

금년부터는

- 사업기간 : 2013 ~ 2017년 (5개년)
- 특구지정현황 : 연수구, 서구·계양구
- 사업분야
 - 초·중등교육 : 외국어 몰입 교육 등
 - 고등 교육 : 외국인 대학생 단기 연수 Camp 활성화 등
 - 산업인력양성 : 글로벌 고등직업 교육
- ※ 국제교육기관 설립 등은 교과부와 협의 후 추진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교육지원관실 ☎ 440-2164]

- 출산·보육 분야 -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 ❖ 양육수당(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 ❖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 ❖ 임신부 엽산제 지원대상 확대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구현을 위한 만0~5세아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2012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전원
- 만0~2세, 4~5세 :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전계층에 지원
- 만3세 :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소득하위 70% 이하의 영유아 보육 가구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액

(단위:원)

구분	보육료 지원단가	기본보육료	비고
0세	394,000	361,000	
1세	347,000	174,000	
2세	286,000	115,000	
3세	197,000	-	
4세	177,000	-	
5세	200,000	-	

금년부터는

○ 2013년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5세 영유아 전원
- 만0~2세 : 보육료는 전계층 지원을 유지하되, **맞벌이·취약 계층 등 실수요자와 전업주부 등을 구분하여 차등 지원**
- ※ 소득하위 70% 가구
⇒ 국가가 **전액 지원**
- ※ 소득상위 30% 가구
⇒ **未지원받는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 부담**
- 만3~5세 : 가구의 소득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원
- 보육료 지원액

(단위:원)

구분	보육료 지원단가	비고
0세	555,000	
1세	371,000	
2세	301,000	
3세	220,000	
4세		
5세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440-2894]

양육보조금(양육수당) 지원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구현을 위한 양육보조금(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2012년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만0~2세 영아 보육 가정
 - 지원금액 : 월 100천원~200천원
 - 12개월 미만 20만원/월
 - 24개월 미만 15만원/월
 - 36개월 미만 10만원/월

금년부터는

- 2013년 양육보조금 지원
 - ※ ‘양육보조금’으로 명칭변경
 - 지원대상 : 만0~5세 영유아 보육 소득하위 70%이하 가정
 - 만0~2세 : 보육시설 이용과 관계 없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만3~5세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 지원금액
 - 만0~2세 : 0세(20만원/월), 1세(15만원/월), 2세(10만원/월)
 - 만3~5세 : 연령 구분 없이 10만원/월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440-2894]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지원금액 : 1회 180만원,
 총 4회 640만원 한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300만원,
 총 4회 1,000만원 한도
- 신청접수 : 부인 주소지 보건소

금년부터는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 확대

- 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청접수는 지난해와 동일
- 지원금액 : 1회 180만원,
 총 4회 720만원 한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회 300만원,
 총 4회 1,200만원 한도
- ▶ 4회차도 동일금액으로 지원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440-2753]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이 10종에서 11종으로(뇌수막염 추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 ◇ 지원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일본뇌염, Td, DTaP-IPV, Tdap)

- ◇ 지원방법
 - 보건소 : 무료
 - 의료기관
: 3개 시·도(인천, 서울, 경기도)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백신비 및 행위수가료 전액 지원

금년부터는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지원접종 : 국가필수예방접종 11종
(BCG, B형간염, DTaP, IPV, MMR, 수두, 일본뇌염, Td, DTaP-IPV, Tdap, **뇌수막염**)
※ 12종 감염병 **11종** 백신으로 확대
(**뇌수막염** 추가 지원)
- 지원방법
 - 보건소 : 무료
 - 의료기관
: 3개 시·도(인천, 서울, 경기도)내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백신비 및 행위수가료 전액 지원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건정책과 ☎ 440-2747]

임산부 엽산제 지원대상 확대

임신초기 엽산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고자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시부터 3개월동안 엽산제를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고령임산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35세이상 고령 임신부**
 - 지원기간 : 임신시부터 3개월간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금년부터는

- **임산부** 엽산제 지원
 - 지원대상 : **연령과 관계없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기간 : 임신시부터 3개월간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440-275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영·아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자인 만6세 이하 영유아의 발달장애 확진을 위한 정밀진단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녀**
(만6세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 ※ 검사 전 필히 보건소 의뢰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국가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금년부터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진단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30% 납부자 자녀**(만6세 이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 ※ 검사 전 필히 보건소 의뢰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국가 영·유아 검진결과통보서,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육정책과 ☎ 440-2754]

- 일자리 창출 분야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신설>
-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 직업훈련사업 확대
-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소개
- ❖ 인천전직지원센터 서비스 확대
- ❖ 사회적기업 발굴·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도 시행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지식기반 서비스업
- 대상요건 :

인천소재(본사, 주공장) 3년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 10명, 증가율 5%** 이상이고, 기업평가가 우수한 중소기업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지원내용 :
 - 인증서 및 현판교부
 - 지방세세무조사 유예(3년)
 - 비전기업 및 수출지원 사업자 선정시 우대
 -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 수출보험 및 보험보증 한도 우대
 - 수출보증료 할인 등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33]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취업지원과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부문 : 기업·산업인턴
 - 지원형태 : 인건비 등 지원
 - 근무기간 : 기업인턴(5개월), 산업인턴(50일, 하계·동계방학)
 - 기업인턴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
- ⇒ 부문별 기업 체험을 통한 경력 개발 및 취업지원

<부문별 인턴 운영 현황>

구 분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지 원
계	460	5개월, 50일	
기업인턴	410	5개월	인건비 등
산업인턴	50	50일	"

금년부터는

-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대상 : 35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부문 : 기업·산업인턴
 - 지원형태 : 인건비 등 지원
 - 근무기간 : 기업인턴(6개월), 산업인턴(50일, 하계·동계방학)
 - 기업인턴 정규직 전환자 취업장려금 지원
- 1. 근무기간 연장
 - 기업인턴 5개월 → 6개월
- 2. 인턴 채용기업 업종별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우대
- 3. 정규직 전환자 취업장려금 지원
 - 지급대상 : 중소기업 기업인턴 정규직 전환자

<부문별 인턴 운영 현황>

구 분	선발 인원	근무기간	지 원
계	370	6개월, 50일	
기업인턴	320	6개월	인건비 등
산업인턴	50	50일	"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3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 2012년 1월
 - 대상기관 : 시, 직속기관, 사업소
 - 대상직종 : 5개 직종 (청소, 기계, 전기, 소방, 영선)
 - 대상인원 : 208명
 - 전환내용
市 간접고용 민간위탁근로자
→ 市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

금년부터는

- 2013년 상반기 중(대상기관 확대)
 - 대상기관 : 시본청,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 대상직종 : 5개 직종 (청소, 기계, 전기, 소방, 영선)
 - 대상인원 : 669명
 - 전환내용
민간위탁근로자
→ 각 기관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채용
- ※ 2014년까지 인천시의 모든 민간위탁근로자들을 직접 채용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 연도별 민간위탁 → 기간제 전환 추진 규모

추진시기	대상직종	시본청	공사·공단 등	소계
2012년	5개 직종	208		208
2013년	5개 직종	47	622	669
2014년	기타직종	190	352	542
소 계		445	974	1,419

이 제도는 2013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73]

직업훈련사업 확대

청년층을 비롯한 지역내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사업의
훈련인원과 훈련과정 수가 확대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지역공공훈련

- 주 최 : 인천광역시, 고용노동부,
인천상공회의소
- 주 관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 훈련대상 : 만15세이상 구직자
- 훈련과정 : 28개 과정
- 훈련인원 : 960명

* 지역공동훈련은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인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입니다. 훈련은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舊 인천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합니다.

금년부터는

◇ 지역공동훈련 확대

- 훈련기간 : 2013. 3월~12월
- 대 상 : 만15세 이상 구직자
- 훈련과정 : 38개 과정
- 훈련인원 : 1,139명
- 훈련기관 :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 기타사항 : 훈련비 무료, 수당지급
기숙사 사용 가능

◇ 2013년 훈련생 모집 [1,2년 과정]

- 모집규모 : 18개 과정, 540명
- 모집기간 : '12년 11월~'13년 2월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http://ic.korchamhrd.net>
- 문의전화 : ☎ 032-810-6520~5

* 1,2년 과정만 우선 모집,
잔여과정(6개월 이하)은 연중 수시모집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42]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 소개

(<http://ic.korchamhrd.net>)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는 남동공단에 소재한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직업훈련 전문기관입니다.

지난해까지는

- ◇ 본 센터는 2012년에 「지역공동훈련」을 시작하면서 기관명칭이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인천기술인력개발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 ◇ 직업훈련 실시
 - 구직자를 위한 채용예정자 교육
 - * 2011년 487명 훈련 96%취업
 - 2010년 447명 훈련 100%취업
 - 근로자 기술향상을 위한 재직자교육
- ◇ 구직자 대상 훈련생 모집 (연중)
 - 1,2년 과정은 전년도 11월 부터 당해연도 2월까지 모집
 - 6개월 이하 과정은 연중 수시 모집
 - * 입학상담 810-6520~5 (연중)

◇ 위치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42]

인천전직지원센터의 서비스 확대

(www.newjob.or.kr)

인천전직지원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인천시가 함께 운영하는 센터로 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며, 2013년 부터는 서비스가 더욱 더 다양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 ◇ 인천전직지원센터 운영개요
 - 개 소 일 : 2010. 8.23
 - 위 치 :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5층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 운영주체 : (재)노사발전재단
 - 운영인력 : 10명 (컨설턴트7명포함)
- ◇ 전직지원서비스 사업 안내
 - [퇴직(예정)근로자 대상 서비스]
 - 고객과 담당컨설턴트가 1:1배정되어
맞춤식 재취업(창업) 서비스 제공
 - * 단,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이용가능
 - [기업대상 서비스]
 - 인재검색 서비스, 인재 발굴 및 추천
 - 채용대행 서비스 지원

금년부터는

- ◇ 2013년 확대되는 서비스 안내
- [근로자대상]
-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중심 지원
- 고객지원플라자 운영 확대
: 고객에게 사무공간·기기 등 제공
- 일반시민 대상 취업특강 확대실시
- 구직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확대
-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연계 실시
- [기업대상]
- 기업활동에 필요한 교육기회 확대
(기업설명회 분기별 실시)
- 기업의 요구에 맞는 핵심·고급 전문
인력 매칭 (잡매칭 컨설턴트 배정)
- ‘기업용 뉴스레터’ 정기적 발송 등
- * 인천전직지원센터 ☎260-3800
(www.newjob.or.kr)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242]

사회적기업 발굴 · 지원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인천 사회적기업 현황>

('12년 12. 12. 기준)

구 분	기업수
계	121
인증	34
예비	87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 신규 고용인원 인건비 지원
- 마케팅, R&D 등 사업개발비 지원

금년부터는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3개월이상의 영업실적 요건 추가
-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심사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연장

- (당초) 2년 → (변경) 3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확대

-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추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0인 이하 지원

○ 사회적기업 홍보전시판매관 운영

- 사회적기업 한마당 개최
- 중·고등학생 체험활동 운영

○ 우수 사회적기업 선정

- 고용부인증 사회적기업 : 4개소
- 인천형예비 사회적기업 : 3개소

○ 인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 홍보관 운영 및 e-book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일자리창출과 ☎ 440-4552]

- 사회복지분야 -

- ❖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 ❖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신설>
- ❖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및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신설>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신설>
- ❖ 중증장애인자립체험 홈 확대
-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확대
-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확대
-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신설>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액을 인상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가구별 현금급여액 : 2012. 11월 고시〉

(월별 지원액)

- 1인 : 453,049원
- 2인 : 771,408원
- 3인 : 997,932원
- 4인 : 1,224,457원
- 5인 : 1,450,982원
- 6인 : 1,677,506원

(월별 지원액)

- 1인 : 468,453원
- 2인 : 797,636원
- 3인 : 1,031,862원
- 4인 : 1,266,089원
- 5인 : 1,500,315원
- 6인 : 1,734,541원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3]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기준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단기 지원하는 것으로 본인 또는 이웃이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00%이하
- ◇ 주거지원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지원
- ◇ 의료지원 지원기간
 -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발생한 비용 지원

금년부터는

- 생계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주거지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 의료지원 지원기간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 비용지원
- 신청부서 : 군·구 긴급지원 부서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2~23, 郡區 긴급지원 부서]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긴급 주거 위기가정의 퇴거 및 주거하향 이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긴급 주거 위기가정 : 실직,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소진 또는 임대료 연체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사회취약계층 긴급 주거비 지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연체되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
- 지원규모

구 분	지원금액(세대당)
긴급 보증금 지원	1,500천 원
긴급 임대료 지원	1,500천 원

※ 긴급한 사유 : 실직, 가정불화, 건강악화 등

- 지원예산 : 117,000천원
- 지원방법 : 임대인에게 직접 분할 지원

이 제도는 2013년 상반기 중에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440-4742 ~ 3]

한부모가족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012년도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만12세미만 아동대상)
 - 지원금액 : 5만원/월

금년부터는

-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최저생계비 130%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만12세미만 아동대상)
 - 지원금액 : 7만원/월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873]

성년후견인 심판절차 및 후견인활동 비용지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일인 2013. 7. 1 이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 및 후견인활동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지원내용
 -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지원
 - 후견인활동 비용지원
 - 지원예산 : 27,000천원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4]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1~3급 등록 여성 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지원내용 : 출산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 지원예산 : 71,000천원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2]

중증장애인 자립체험 홈 확대

생활시설 퇴소자 및 재가장애인중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전 지역사회 복귀 적응 체험홈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 중증장애일자립체험홈 설치·운영

- 개소수 : 4개소
- 입주대상 : 탈시설 및 재가중증장애인
- 지원내역 : 전세임대비 및 운영비
 - 임대비 개소당 / 1억원
 - 운영비 개소당/월1백만원
- 입주기간 : 최장 24개월

금년부터는

○ 중증장애일자립체험홈 추가 설치·운영

- 개 소 수 : 총5개소(1개소 추가)
- 기설치지역 : 남동구(1), 부평구(1), 계양구(2)

※ 문의처

- 남동구 누리자립생활센터(070-7637-8455)
- 부평구 올림자립생활센터(514-0450)
- 계양구 경인자립생활센터(205-7439)
민들레자립생활센터(542-9294)

* 2013년 1개소 신규설치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예정

- 지원내역 : 전세임대비 및 운영비
 - 임대비 개소당 / 1억원
 - 운영비 개소당/월1백만원
- 입주대상 : 탈시설 및 재가중증장애인
- 입주기간 : 최장 24개월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2, 郡區 장애인업무 부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체험홈 퇴소자에게 자립시 까지 일정기간 지역사회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지난해까지는

-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운영
 - 개소수 : 2개소
 - 지원내역 : 전세임대비
 - 개소당 / 1억원
 - 입주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 /재가장애인
 - 입주기간 : 최장 5년까지

금년부터는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추가 설치, 운영
 - 개소수 : 총3개소(1개소 추가)
 - 기설치지역 : 남동구(1), 계양구(1)
 - ※ 문의처
 - 남동구 구청 노인장애인과(453-2524)
 - 계양구 경인지립생활센터(205-7439)
 - * 2013년 1개소 신규설치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 예정
 - 지원내역 : 전세임대비
 - 개소당 / 1억원
 - 입주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퇴소자 /재가장애인
 - 입주기간 : 최장 5년까지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2, 郡區 장애인업무 부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확대

지난해까지는

-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65세미만
등록 1급장애인
 - 아동급여시간 : 1~2등급
 - 1등급 : 520천원(62시간)
 - 2등급 : 350천원(42시간)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제공 : 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금년부터는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원대상 : 만6세이상 65세미만
등록 1급, 2급장애인
 - 아동급여시간 : 1~4등급
 - 1등급 : 886천원(103시간)
 - 2등급 : 711천원(83시간)
 - 3등급 : 536만원(62시간)
 - 4등급 : 361만원(42시간)
 -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 지원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제공 : 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2, 郡區 장애인업무 부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의 양육·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부모님에게 전문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부모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자 / 전국가구 평균 100% 이하
 - 지원기간 : 6개월
 - 지원방법 : 전자바우처로 지원
 - 지원예산 : 91,200천원

이 제도는 2013년 4월(예정)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4]

- 가정·청소년분야 -

- ❖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신설>
-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신설>
-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사업 시범 운영<신설>
- ❖ 초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확대
- ❖ 청소년복지시설 보호기능 강화
-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준 인상
- ❖ 다자녀 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 운영<신설>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인상

인천여성가족재단 출범

지역여건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성사회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출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하여,

- 여성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체계적인 여성 인권교육과 권익보호 프로그램 개발
- 가족정책 수립을 위한 가족 실태조사 실시
- 성폭력·가족폭력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마련
- 성폭력·아동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

※ 주소 : 부평구 갈산동 375-1

※ 연락처 : 511-3141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693]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 지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지원기간 : 2013. 1월 ~ 11월
 - 지원기관 : 10개 기업
(비전기업 8개소, 공공기관 2개소)
 - 지원내용
 - 가족친화제도 자문형 컨설팅 지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취득 지원
 -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추진방법
 -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실시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872]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사업 시범 운영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시범운영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배치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치인원 : 4명

-주요내용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입국초기부터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필요한 단계별 프로그램 연계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례관리

·상담, 한국어교육, 방문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취·창업교육, 생활안내 등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868]

초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확대 실시

초등학교 특정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통합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초·중·고교생 대상 교육실시
 - 기간 : 2012. 3 ~ 12월
 - 대상 : 초·중·고교생
 - 실적 : 648회 22,212명
 - 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

※ 초·중·고 교육과정 중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1회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특정학년 전원에 대한 학급별 전수교육 실시 필요

금년부터는

- 초등학생 대상 성 인지적 인권통합교육
 - 기간 : 2013. 3~12월
 - 대상 : 인천시 내 초등학교 5학년 1,243학급 33,186명
 - 내용
 - 교육 매뉴얼 개발, 전담강사 교육
 - 학교별 교육 수요파악
 -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대한 학급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실시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758]

청소년복지시설 보호기능 강화

가출청소년들의 기본적 생활환경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가정·학교·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가출청소년쉼터 및 자립생활관의 보호기능이 강화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청소년쉼터 운영

구 분	보호기간	비 고
일시쉼터	24시간 이내 (운영: 9시~18시)	2개소
단기쉼터	3개월내외 (3개월 연장가능)	4개소
중장기 쉼터	2년내외 보호 (1년 연장가능)	2개소
자립 생활관	6개월~2년	2개소

금년부터는

○ 청소년쉼터 야간 보호기능 강화 및 보호기간 확대

구 분	보호기간	비 고
일시쉼터	7일내외 (숙식제공)	2개소 (연수, 부평)
단기쉼터	6개월내외 (6개월 연장가능)	4개소 (남동, 남 부평)
중장기 쉼터	2년내외 보호 (1년 연장가능)	2개소 (남동, 남)
자립 생활관	6개월~2년	2개소 (남동, 남)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53]

□□ 청소년쉼터 세부현황

구 분	시 설 명	주 소	전화(팩스)	홈페이지
일 시 켜	꿈꾸는별	연수구 연수2동 634-5	817-1318 (818-1318)	www.icstar.net
	한울타리	부평구 부평1동 529-77 부평시장역 지하1층	516-1318 (526-1318)	www.dropincenter.or.kr
단 기 켜	바다의별(남자)	남구 주안2동 547-5	438-1318 (439-1318)	www.ic1318.org
	우리들(남자)	부평구 십정동 479-12	442-1388 (442-1389)	www.lovehome.or.kr
	하늘목장(여자)	부평구 부개2동 197	528-2216 (528-2218)	www.skyshimter.org
	하모니(여자)	남동구 구월동 1314-16 대영빌딩 5층	468-1318 (469-1380)	www.icshimter.or.kr
중 장 기 켜	별마루(남자)	남구 주안동 557-24 대창빌라 가동	875-7718 (875-7719)	www.icyouthself.org
	예꿈(여자)	남동구 만수동 886-44 원빌리지 301호	465-1393 (439-1394)	club.cyworld.com/home 1318
자 립 생 활 관	자립생활관(남자)	남구 주안동 557-24	875-7718 (765-1320)	www.icyouthself.org
	행복자리(여자)	남동구 만수2동 869 인평@ 302호	467-1398 (439-1394)	없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준 인상

도움이 필요한 아동 중 입양, 대리양육,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기준을 인상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수 있도록 지원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구 분	운 영 비	비고
3 세 미 만 아동	1인당 81,200원	
3세이상 아동	1인당111,300원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인상

구 분	운 영 비	비고
3 세 미 만 아동	1인당 89,237원	
3세이상 아동	1인당118,157원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82]

다자녀 가구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 운영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 시행
 - 어르신 『아동보호 美』 사업은?
다자녀 가구에 건강하고 양육 경험이 많은 어르신을 연계하여 아동의 보호(안전), 일시양육, 가사서비스, 이동보조 등 아동을 보호하고, 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토록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 인천에 거주하면서 0~만17세 이하의 아동을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 서비스대상 : 생후2개월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안전) 등하교(등하원) 서비스 및 양육 상담
 - 가사·양육·이동보조 서비스
 - 본인 부담 비용 없음
 - 신청 : 읍·면·동주민센터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8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비 인상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장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요보호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써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 지원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 지원액 : 양육비 매월 8만원
 - 지원인원 : 792명

금년부터는

- 지원액 : 매월 10만원
('12년 월8만원 → '13년 월10만원)
- 지원인원 : 792명
- 기대효과 : 양육비 증액을 통한 요보호아동의 복지증진 기여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83]

- 노인 분야 -

-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신설>
- ❖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운영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의미 있고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경로당을 여가문화·교육·봉사활동 등의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로당 광역지원센터가 2013년 초에 설치·운영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인천광역시 경로당 지원센터 운영

- 장 소 :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內
(남구 송의동 441-48)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연합회
☎ 883-3751

- 주요업무

· 경로당 이용자의 여가욕구 조사
및 분석 지원

· 지역내 자원현황 및 서비스
운영실태 파악 및 DB구축

·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자원 연계

· 군구경로당 사업계획, 예산관리
민원상담등의 업무를 담당함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440-2814]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운영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와 사회 참여의 기회를 드리고자 소규모 집단 경작지를 확대 조성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3개소(3개 권역)로 조성·운영중

권역별	해당구	소재지	필지	운영시기
남동권역	남동구	남동구 수산동 13-1 일원	220	운영중
남부권역	남구 연수구	연수구 선학동 145-1 일원	198	운영중
북부권역	부평구 계양구	계양구	100	운영중

금년부터는

○ 4개소(4개 권역)로 확대 운영
- 1개소 추가 설치(서구)

권역별	해당구	소재지	필지	운영시기
남동권역	남동구	남동구 수산동 13-1 일원	220	운영중
남부권역	남구 연수구	연수구 선학동 145-1 일원	198 ↓ 448 (2013년)	운영중
북부권역	부평구 계양구	계양구 굴현동 338	100	운영중
서부권역	중구 서구	중구 서구	100	2013년 4월 운영

※ 3월경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참여대상자 모집 공고

이 제도는 201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440-2822, 郡區 노인복지 업무 부서]

- 생활·민원 분야 (민원·청소·장사) -

- ❖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 ❖ 청각언어장애시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상담 지원
- ❖ 여권 발급수수료 인하
- ❖ 공설화상시설(시립승화원) 사용료 감면 확대
-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신설>
- ❖ 소규모수도시설 업무는 군·구 → 시로 이관
- ❖ 공공도서관 확충<신설>
- ❖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신설>
- ❖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 ❖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변경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운영방식

-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

◇ 대상시설

- 시설의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
- 청사 및 지자체의 청사(사무실, 민원대기실 등)
- 300석 이상 공연장
-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목욕장
- PC방, 150㎡ 이상 음식점(1/2 이상 구역)

◇ 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소유자 등 : 300만원 이하
-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 5만원, 10만원

금년부터는

○ 운영방식

- 시설 전체 금연(※흡연실 설치 허용)

○ 대상시설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유치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상기 시설 흡연실은 옥상, 출입구 10m 이상 거리 설치)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등
- 300석 이상 공연장, 체육시설, 목욕장
- 법원, 공기업청사 및 지자체의 청사 (※청사란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포함)
- PC방(※'13.6.8부터 면적 구별없이 일제 시행)
- 음식점(휴게, 일반, 제과점) 단계적 시행
- 150㎡ 이상 음식점 : '12.12.8일부터
- 100㎡ 이상 음식점 : '14.1월부터
- 모든 음식점 : '15.1월부터

○ 과태료

-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이하
- 흡연자 대상 : 10만원으로 통일

※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보건정책과 ☎ 440-2725]

청각언어장애시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상담 지원

행정서비스 수혜를 시민 골고루 나누기 위해 이제는 청각언어장애시민도 '120 미추홀콜센터' 에 스마트폰 앱으로 민원상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 ◇ 청각언어장애시민 특수번호로만 민원상담 신청
 - 120 미추홀콜센터에 070-7451-9911 번호만 화상민원상담 가능

금년부터는

- 청각언어장애시민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상담 신청 및 이용가능
 - 청각언어장애인시민의 복지 행정,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사항이 스마트폰 앱으로도 민원상담 가능 (기존 070-7451-9911번 화상상담 병행)

이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정보화통계담당관 ☎ 440-2332]

여권 발급수수료 인하

정부(외교통상부)는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에 따라 여권발급 수수료 중 복수여권(5년, 10년) 및 복수여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수수료를 각 2,000원씩 인하하기로 함.

※ 국제교류기금을 제외한 순수 여권 수수료 인하율 약 5~8%

지난해까지는

◇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	유효 기간	수수료	대상자
복수 여권	10년	55,000원	만18세이상
	5년	47,000원	만8-18세미만
		35,000원	만8세 미만
기타	기간 연장	25,000원	'08.6.29 이전 발급자 중 기간연장 가능여권

금년부터는

○ 복수여권 및 기간연장 여권발급 수수료 인하

- 인하대상 : 복수여권 중 5년,10년 및 기간연장
- 변동수수료 내역

여권 종류	유효 기간	수수료	대상자
복수 여권	10년	53,000원	만18세이상
	5년	45,000원	만8-18세미만
		33,000원	만8세 미만
기타	기간 연장	23,000원	'08.6.29 이전 발급자 중 기간연장 가능여권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시민봉사과 ☎ 440-2477]

공설화장시설(시립승화원) 사용료 감면 확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려는 것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신설(2012.2.1) 시행(2013.2.2)]

지난해까지는

- ◇ 시립승화원 화장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관내주민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 관내관외주민 50% 감면

- ※ 시립승화원 사용료
 - 관내 대인 : 90,000원
 - 관외 대인 : 1,000,000원

금년부터는

- 시립승화원 화장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관내관외주민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 공헌자 : 관내관외주민 면제

- ※ 시립승화원 사용료
 - 관내 대인 : 90,000원
 - 관외 대인 : 1,000,000원

이 제도는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노인정책과 ☎ 440-2834]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6. 1일 부터 한강수계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인천광역시 한강수계는 굴포천 유역과 나진포천 유역이 해당되며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시청 수질보전 하천과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 시행기간 : 2013. 6. 1~2020. 12. 31
- 대상항목 :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T-P(총인)
- 대상지역
 - 굴포A 유역 : 청천천 지류[부평구(십정동 제외), 남동구(간석동 일부 지역), 서구(가정동 등 일부지역)], 굴현계산천 지류[계양구 일부지역]
 - 한강J 유역(나진포천 지류) : 나진포대곡천 지류(서구 일부 지역), 계양천 지류(계양구 일부지역)

○ 총량관리 내용

- 배출농도규제 → 배출총량관리로 전환
- 목표수질 및 배출총량 준수해야만 각종 개발사업 가능
- 개발사업 추진시 시청 수질보전 하천과와 협의절차 필요

이 제도는 2013년 6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수질보전하천과 ☎ 440-3603]

소규모수도시설 업무는 군·구→시로 이관

「수도법」 개정으로 그동안 군·구에서 관리해 오던 소규모수도시설 업무가 市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수도법」 제3조(정의)에 따라 1일 공급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군수·구청장이 관리**

※ 대상시설

- 마을상수도 : 20~500m³/일
- 소규모급수시설 : 20m³/일 미만

금년부터는

○ 「수도법」 제3조(정의)에 따라 1일 공급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시장(상수도사업본부장)이 관리**

○ 행정기관

지역구분	관할기관
중구, 용진군	연수수도사업소 ☎720-3582
남 구	남부수도사업소 ☎720-3366
남동구	남동수도사업소 ☎720-3447
계양구	계양수도사업소 ☎720-3746
서 구	서부수도사업소 ☎720-3882
강화군	강화수도사업소 ☎720-3982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720-2182~4]

공공도서관 확충 개관

시민 이용자의 접근성 등 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공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3개소가 확충 개관 운영됩니다.

※ 2014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권장기준인 인구 5만명당 공공도서관 1개소를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신설)
- ※ 공공도서관 47개소 운영

금년부터는

- 공공도서관 50개소 개관·운영
- 공공도서관 3개소 확충 개관·운영

도서관명칭 (가칭)	위 치
청 천	부평구 청천동 200-59
관 청	강화읍 관청리 580
만수2동	남동구 만수2동 1116-2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문화예술과 ☎ 440-3991~2]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양 및 학습장소의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의 정보접근을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합니다.

※ 『작은 도서관진흥법』 제정(2012.2.17) 및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012. 10.2)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운영실적 우수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 ⇒ 인천시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중 운영실태조사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 ※ 총사업비 : 166백만원
 - 순회사서 지원
 - ⇒ 장서관리 기술 지원 운영 지도지원
 - 공공도서관과 정보협력망 구축
 - ⇒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지원
 -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 : 연2회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문화예술과 ☎ 440-4002~3]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확대

주민자치센터가 독서와 음악감상,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한 북카페를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북카페 설치 주민센터

구분	개소	주민센터
계	21	
중구	1	북성동
동구	2	송림1동, 송림2동
남구	1	용현5동
연수	3	선학동, 청학동, 동춘2동
남동	3	간석1동, 만수1동, 남촌도림동
부평	3	부평2동, 부평6동 청천1동
계양	4	효성2동, 계산2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
서구	2	석남1동, 석남3동
강화	1	하점면
옹진	1	북도면

금년부터는

○ 북카페 15개소 추가 조성

구분	개소	주민센터
계	15	
중구	12	영종동
동구	3	화수1화평동, 송림4동, 송림 6동
남구	1	학익1동
연수	1	동춘3동
남동	1	논현고잔동
부평	3	부평3동, 부평4동, 청천2동
계양	1	계산1동
서구	1	검단2동
강화	2	선원면, 삼산면
옹진	1	자월면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자치행정과 ☎ 440-2402]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변경

2009헌마339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 따라 신규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 소방사, 지방소방사,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응시연령 만30세 이하

금년부터는

- ◇ 소방사, 지방소방사,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응시연령 **만40세** 이하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소방행정과 ☎ 870-3012]

- 교통·건축·주택관리 분야 -

- ❖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무의 여행
- ❖ 팽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준공
- ❖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등 사무 이양
- ❖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추진<신설>
-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자기부상열차타고 용유·무의 여행

세계2번째로 개발되어 전국최초로 운행하게되는 도시형자기부상열차를 타고 용유·무의 여행이 가능해 집니다.

※ 운임은 무료이며, 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하여 용유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철도를 이용하여 용유·무의도 여행 시 6월부터 11월까지 주말에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용유역(임시역)에서 하차하여야 했음.

금년부터는

- 철도를 이용하여 용유·무의도 여행시 **9월이후 부터** 매일 수시로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를 인천국제공항역에서 환승하여 자기부상 철도 용유역에서 하차하면 됨.
- 운임 : 무료
- 연장 : 6.1km
- 정거장 : 6개소
(인천국제공항역, 장기주차장역, 합동청사역, 국제업무단지역, 워터파크역, 용유역)



이 제도는 2013년 9월 이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관련부서 : 市 대중교통과 ☎ 440-3833]

팽이부리마을 보금자리주택 준공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에 전국 최초 원주민들의 100% 재정착을 목표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보금자리주택을 준공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수립
 - 만석동 “팽이부리마을” 도시주거재생계획 수립
 - 2020 도시·주거정비계획 고시
- 보금자리주택 건설 실시설계 완료
 -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012. 5. 10.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 (98세대)
- 보금자리주택 건설 착공
 - 지장물조사 완료 및 보상추진
 - 2012. 10. 8. 보금자리주택 착공

금년부터는

- 보금자리주택 공사 본격 추진
 - 2013. 10월 보금자리주택 준공
 - ※ 보금자리주택 골조공사 상반기 중 완료
-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입주
 - 보금자리주택 부지 기존세대 입주
 - 팽이부리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입주
 - 기존주택 현지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 활용

이 사업은 2013년 10월에 준공됩니다.

[관련부서 : 市 주거환경정책관 ☎ 440-3451~3452]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등 사무 이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설기계사업 등록 사무 등을 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시·도시사 사무

-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등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금년부터는

○ 군수·구청장 사무

-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 등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이 제도는 2013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13.2.23일부터)

[관련부서 : 市 건설심사과 ☎ 440-3736]

「우수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추진

평지붕 일색인 건축물의 디자인을 탈피하여 각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와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우수디자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적용대상

- 건축심의대상 공동주택
16층 이상으로써 300세대 이상
- 다중이용 시설물

구 분	규모
문화집회시설	5,000㎡ 이상 건축물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 우수디자인 인센티브 : **용적률 5%**

○ 우수디자인 인정기준

- 다양한 주동형식, 입면계획 등을 검토
-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결정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440-4722~4]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에 따라 공공건물 및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이 일정규모(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건축물 석면조사

- 조사대상

· 공공건물 및 공사·공단 등

· 다중이용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 어린이 시설은 연면적 430㎡ 이상

- 조사완료 기간

· 1단계(법시행이후 2년 이내 조사)

공공건물 및 1999.12.31일 이전 건축

허가(신고) 건축물

· 2단계(법시행이후 3년 이내 조사)

2000.1.1일 이후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석면안전관리법은 2012.4.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부서 : 市 환경정책과 ☎ 440-3544]

- 안전·소방 분야 -

- ❖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신설>
- ❖ 안전·안심마을 조성사업 실시
- ❖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 생활안전 구조활동 전담구조대 운영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택시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 휴대폰 문자로 전송함으로써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시민에게 보다 안전한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택시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 택시 승객의 승하차 정보를 보호자에게 휴대폰 문자로 전송
- 지원대상 :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
- 이 용 료 : 무료
- 이용방법
 - 인천콜(www.incheoncall.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
 - 스마트폰에서 '안심택시콜'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이용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대중교통과 ☎ 440-3822]

안전 · 안심마을 조성사업 실시

방법이 취약하거나 폭력예방 인프라 부족지역에 대한 안전망구축을 통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등하교도우미 마미캡 운영

- 기간 : '13. 3~12월
- 지역 : 동구, 남구, 부평구 다세대주택지역 등
-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150명
-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 및 우범지역 순찰

※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실시

○ 찾아가는 폭력예방서비스

- 기간 : '13. 3 ~ 12월
- 지역 : 동구, 강화군, 옹진군
- ※ 성폭력상담소 등 지원시설 부족 지역
- 내용 : 정기적인 순회상담 및 폭력대응방안 홍보·교육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여성정책과 ☎ 440-2758]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최근 발생하는 ‘아동 성폭행 및 묻지마 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 예방하고자, 건축물의 설계 및 도시계획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대상사업

- 도시개발사업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수립 및 인·허가
- 건축허가

구 분	규 모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아파트
다중이용시설	5,000㎡ 이상 판매,문화집회시설 등

○ 시설별 설계 기준

- 분명한 시야선 확보, 적합한 조명
- 건물내 침입경보기, CC-TV설치 등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건축계획과 ☎ 440-4722~4]

□□ 시설별 설계기준 주요내용

시설별	주요 설계 반영 사항	비고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 문주를 통하지 않고 출입할 수 없도록 계획 - 놀이터 : 입주자들의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 - 지하주차장 : 적절한 조명 및 이동방향, 비상벨 설치 - 담장 : 영역성 및 시야 확보를 위한 투시형 담장설치 - 경비실 : 시야차단 장애물,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 휴게시설 : 자연적 감시 가능, 사각지대가 없는 조명 등 		
상업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배관 : 가스배관에 요철이나 특수덮개 설치 - 승강기 : CC TV, 승강기 내부가 보이도록 계획 - 벽면 : 야간 보행로 유도 및 가로활성화를 위해 투시형 셔터 설치, 방범필름 부착 - 광고물 : 보행자의 시야차단 방지, 시야선 확보 등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환경, 여건 및 현황 분석 (유해적 영향범위 검토) - 고립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배분 계획 -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에 따른 영역성 구분 및 자연스러운 연계 등 		
공공시설물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수목 및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계획 -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일탈행위 예방 등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주변 공원, 산책로, 이면도로 등 우범화 방지대책 - 안전한 통행로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등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시야범위 확보 및 진행방향 확인가능한 계획 - 지하도 내부가 차단되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계획 등 	

※ 도시가스 배관 적용 사례



【가스배관을 이용한 침입】



【방범용 가시덮개 설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대형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영세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지난해까지는

◇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와 자기 건물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건물소유자가 화재보험 가입.

- (가입대상) 11층 이상 건축물, 일정규모이상 공공건축물, 2,000㎡ 이상 다중이용업소 입점 건축물 등

금년부터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가입주체가 되어, 화재·폭발 시 타인배상을 주목적으로 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보장하도록 업소 단위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유흥단란주점 등 면적에 상관없이 22종 다중이용업소 전체
- (시행유예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150㎡미만의 영업장의 경우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이 제도는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예방안전과 ☎ 870-3065]

생활안전 구조활동 전담구조대 운영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 ◇ 119구조대의 비긴급 생활안전 출동 건수 증가로 긴급구조 대응역량 약화
 - 비 긴급 상황에 전문구조대의 잦은 출동으로 긴급자원투입 효율성 저하
 -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민원 등의 사항에 대한 소방서비스 부족
- ※ 3년간('09년~'11년)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 평균46.4% 차지

금년부터는

- 각종 생활안전사고* 구조출동 증가에 따른 효율적 소방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전 구조활동을 전담하는 『생활안전구조대』를 운영, 신속한 출동으로 시민생활 불편 및 위험 해소(8개대 60명 운영)
- * 동물구조, 벌집제거, 안전조치, 간힘 사고, 승강기 사고 등

이 제도는 201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대응정책과 ☎ 870-3107]

- 도시계획 분야 -

- ❖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류 하나로 간편하게
- ❖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 ❖ 재개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운영<신설>
- ❖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제한
-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완화(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신설>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 신설<신설>
- ❖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층수) 완화<신설>
- ❖ 계획관리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신설>
- ❖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신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 !

지적, 건축물, 가격, 등기 등 18종의 공부를 1종으로 통합하여 한눈에 볼수 있도록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여러기관을 찾아서 각종 부동산정보를 발급받던 것을 한곳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비용절감

지난해까지는

◇ 복잡한 민원업무

- 2개부처, 5개법령, 18종의 부동산 공부 등으로 따로따로 관리
- 지적(7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 건축물(4종) : 총괄표제부, 일반건축물, 집합표제부, 집합전유부
- 토지(1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가격(3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등기(3종) :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

금년부터는

○ 일사편리 부동산 민원업무

- 언제부터 서비스

2013년	지적, 건축물
2014년	지적, 건축물, 토지, 가격
2015년	지적, 건축물, 토지, 가격, 등기

- 어디에서 발급
 - 방문민원 : 군·구청 민원실
 - 인터넷민원 : 민원24 www.g4c.go.kr
- ※ 단계적으로 1종 증명서로 통합

이 제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토지정보과 ☎ 440-4573]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2013. 1. 1일부터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외의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합니다.

※ 상세주소 : 동·층·호를 세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주소를 말함.

지난해까지는

- ◇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 부여대상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금년부터는

- 원룸다가구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
 - 시행시기 : 2013. 1. 1일부터
 - 부여대상 : 원룸다가구 등 건축물 대장상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부여절차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① 부여신청(소유자 또는 임차인)
 - ② 기초조사(군구청장)
 - ③ 부여통보(군구청장→민원인)
 - ④ 안내판설치(소유자)
 - 안내판 설치 : 건물소유주(비용부담)
 - 접수처 : 각 군구청장(지적업무부서)
 - ※ 임차인 :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전체 임차인의 과반이상의 동의 후 신청 가능.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토지정보과 ☎ 440-4592~3]

재개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정비 사업 추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주택재 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개인별 분담금을 개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입니다.

○ 추정분담금이란?

- 토지나 건축물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가 등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기존 자산을 평가하고, 정비사업계획서, 사업비, 분양가 등을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개인별로 분담하는 추정금액을 말함.

※ 추정분담금은 사업 환경이 바뀔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3년 상반기 중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주거환경정책관 ☎ 440-3442~3445]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기반시설의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체육시설”

금년부터는

- 기반시설 중 체육시설의 범위 제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범위 제한
- ※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체육시설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완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완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가능
 -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설치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 신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 규정사항에 위원의 해촉 및 기피 규정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위원의 해촉 및 기피규정을 추가 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층수)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하는 숙박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

금년부터는

-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제한 (층수) 완화
- 계획관리지역내 건축하는 숙박시설
-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4층 이하
- ※ 계획관리지역내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4층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의 확충 및 국민불편 해소에 기여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 상습침수·산사태 또는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을 “방재지구*로 지정
 -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 방재지구,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고 이 중 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 건축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
 -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연안침식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 지정을 의무화 하여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이 제도는 2013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부터는

◇ (신설)

□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 도시주변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공장·창고 등이 개별적으로 무질서하게 입지되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개발행위가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 개발을 유도

⇒ 성장관리방안이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용도 등을 미리 정하여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

이 제도는 2013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 市 도시계획과 ☎ 440-4613 / 군·구 도시계획팀]

- 세정 분야 -

- ❖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 ❖ 지방세 그린 앱 고지 및 납부서비스 시행
- ❖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서비스 확대

지방세 세외수입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현금 및 일부 제한된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하던 납부서비스를 모든 카드로 확대시행하며, 민원수수료에 대한 납부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신한카드만 납부가능
- ◇ 창구 카드납부는 불가, 이택스 (etax.incheon.go.kr)사이트 방문 납부만 가능

금년부터는

- 군·구 민원실, 교통부서에서 창구 카드납부(모든 카드 가능)
- 민원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

이 제도는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세정과 ☎ 440-2577]

지방세 「그린 앱」 고지 및 납부서비스 시행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체납분)를 고지 [안내]합니다. 간편하게 카드,휴대폰결제를 통하여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우선 체납분부터 시행후 지방세 정기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스마트폰에서 지방세(체납분) 안내문 수신 및 납부 가능
- 이동통신사(SK)의 '통합고지서' 앱 혹은 'MPost' 앱을 다운로드 하여 고지서 수신 동의 시 앱으로 고지서(체납안내) 발송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기분 제외]

[관련부서 : 市 세정과 ☎ 440-2577]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 확대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 ◇ 적용대상 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금년부터는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군·구 세무민원실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 납부
-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는 '13년 상반기내 확대 적용
- 적용대상 카드 :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 수협, 광주, 전북카드는 '13년 상반기내 시행예정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일부는 상반기내 시행)

[관련부서 : 市 세정과 ☎ 440-2577]

- 농축수산업 분야 -

- ❖ 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 및 영업시간 변경 운영
- ❖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신설>
- ❖ 축산업 허가제 시행
- ❖ 야생고양이 TNR(중성화 후 방사) 시행
- ❖ 식육가공품 판매업 시행

농산물도매시장 휴업일 및 영업시간변경 운영

도매시장을 유통환경에 맞는 조정·운영으로(휴업일 및 영업시간 확대)

- ☞ 도매시장은 ⇒ 거래물량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
- ☞ 유통종사자에게는 ⇒ 여가활용확대로 사기진작 및 건강증진 기여
- ☞ 시민에게는 ⇒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구매기회 확대 편의제공 등

도매시장 이용의 편리함을 위해 휴업일 및 영업시간이 변경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 휴업일
일요일, **1월1일**,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 ◇ 영업시간 : 02:00부터 15:00까지
※ 잔품정리시간 별도 약2시간

금년부터는

- 휴업일
일요일, **신정부터 2일간**,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 영업시간 : **02:00부터 17:00까지**
(잔품정리시간 포함)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40-4372]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효율적인 가축방역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축산관련차량 등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신설)

금년부터는

- 축산관련차량 등록제 본격시행
 - 등록대상 :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와 운전자
- 등록방법
 - 교육 이수 및 관할 군구청 등록
 - GPS 장착
- ※ 축산관계시설이란?
 - 가축사육시설
 - (도축, 집유, 사료·비료제조) 업소
 - 가축시장, 종축장, 계란 집하장
- ※ 미등록시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40-4394]

축산업 허가제 시행

가축방역관리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축산업등록제 시행
- 등록대상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 기준면적 : 소 30m², 돼지 50m², 닭 50m², 오리 50m² 이상
- 등록방법
 - 관할 군구청 등록신청

금년부터는

- 축산업 허가제 시행
 - 허가대상
 - 종축업, 부화업, 소정액생산업
 - 소100, 돼지2,0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5만, 오리1만수 이상 사육농가
 - 허가방법
 - 지역축협등에서 관련교육 이수
 - 관할 군구청 허가신청
- ※ 교육 미수료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이 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40-4396]

야생고양이 TNR (중성화후 방사) 시행

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심에서 사는 야생고양이의 개체수 조절과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길고양이 TNR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난해까지는

- ◇ 동물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동물의 적용
 - 유실·유기동물과 동일
- ◇ 처리절차
 - 포획 → 공고 → 최종처리

금년부터는

- 길고양이 TNR 시행
 - 포획·중성화 수술후 포획 장소에 재방사를 통해 개체수 조절
 - TNR (Trap-Neuter-Return)
- 대상 : 도심에 자생적으로 살아 가는 3개월 이상 길고양이
- TNR의 효과
 - 암컷의 발정 교미음(울음) 제거
 - 영역싸움의 감소로 소음 제거
 - 비인도적 동물 살처분 지양

이 제도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40-4395]

식육·가공품 판매업 시행

종전 식육판매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식육·가공품판매업이 시행됩니다.

지난해까지는

- ◇ 신청기관 : 군수·구청장
- ◇ 영업의 종류 : 식육 판매업
- ◇ 영업장 면적 : 26.4㎡
- ◇ 영업의 범위 : 식육 판매

금년부터는

- 신청기관 : 군수·구청장
- 영업의 종류 : 식육·가공품판매업
- 영업장 면적
 - 식육·가공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33㎡ 이상이어야 함
 - 식육 판매 경우 26.4㎡ 이상 권장
- 영업의 범위
 - 식육 판매 및 식육·가공품의 제조·가공
- 개별시설기준
 -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준용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됩니다.(시행 월·일 미정)

[관련부서 : 市 농축산유통과 ☎ 440-4393]

2013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3년 1월 일 발행

인천광역시 정책기획관실

TEL 032-440-2130

FAX 032-440-8628